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- 집합건물 -

고유번호 2342-1996-049705



[집합건물]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476-6 우정그린빌리지 제4층 제401호

【 표 제 부 】 (1동의 건물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	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476-6 우정그린빌리지	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공동주택 1층 164.80㎡ 2층 164.80㎡ 3층 164.80㎡ 4층 164.80㎡	도면편철장 제4책제383장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08월 03일 전산이기
2		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476-6 우정그린빌리지 [도로명주소]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1길 44	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공동주택 1층 164.80㎡ 2층 164.80㎡ 3층 164.80㎡ 4층 164.80㎡	도로명주소시행으로 인하여 2014년6월19일 등기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소 재 지 번	지 목	면 적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.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476-6	대	356㎡	1997년11월27일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08월 03일 전산이기

[집합건물]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476-6 우정그린빌리지 제4층 제401호

【 표 제 부 】 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접 수	건 물 번 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997년12월2일	제4층 제401호	철근콘크리트조 76.55㎡	도면편철장 제4책제383장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08월 03일 전산이기
(대지권의 표시)				
표시번호	대지권종류		대지권비율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 소유권대지권		3560분의 445	1997년11월27일 대지권 1997년12월2일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08월 03일 전산이기
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 (전 2)	소유권이전	1997년12월16일 제75340호	1997년5월25일 매매	소유자 이동일 480807-***** 울산 중구 우정동 476-6 우정그린빌리지 401호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08월 03일 전산이기
1-1	1번등기명의인표시 변경		2011년10월31일 도로명주소	이동일의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1길 44, 401호(우정동, 우정그린빌리지) 2013년11월4일 부기
2	소유권일부이전	2008년11월28일 제92971호	2008년11월24일 증여	공유자 지분 2분의 1 박영순 471023-*****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476-6 우정그린빌리지 401호

【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 (전 2)	근저당권설정	1999년3월20일 제14595호	1999년3월17일 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29,900,000원 채무자 이동일 울산 중구 우정동 476-6 우정그린빌리지 401호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10136-0000018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 (태화강자점)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08월 03일 전산이기
2	1번근저당권설정등 기말소	2002년3월13일 제18733호	2002년3월13일 해지	
3	근저당권설정	2015년5월11일 제97416호	2015년5월11일 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19,500,000원 채무자 박영순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1길 44, 401호(우정동, 우정그린빌리지) 근저당권자 울산중부새마을금고 234244-0000292 울산광역시 중구 당산3길 33(우정동)

-- 이 하 여 백 --

관할등기소 울산지방법원 등기과

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
* 기록사항 없는 갑구, 을구는 ‘기록사항 없음’ 으로 표시함.

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